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61

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:이연희·김정호·홍기원

이정문 • 이병진 • 정성호

허 영ㆍ허종식ㆍ박상혁

박홍배 · 한민수 · 박 정

한준호 • 문진석 • 서미화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,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사전 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정 지연으로 적절한 조 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신속히 건축물의

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 호하고,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제33조제2항 단서 신설). 법률 제 호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건축물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조치가 시급하거나 신속히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3조(안전점검) ① (생 략) 제33조(안전점검) ① (현행과 같 유)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(2) ----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 조·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(임대주택은 임 대사업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 에서 같다)에 그 사실을 통보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, 해당 건축 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 다만, 건축물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입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안전조치가 시급하거나 신 속히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·군 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

	<u>할 수 있다.</u>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